

조선시대 백성의 언론



조선시대에 관료들만 억울한 일이 있고,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책의 입안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언론이 개방되었다. 유교윤리와 강상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신분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백성들에게도 언론 참여의 길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누구나 칠 수 있었으나 문턱이 높았던 '신문고'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는 한편, 억울한 일을 바로잡음으로써 선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청원·상소·고발장치가 '신문고'였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몇 겹의 관료체계를 거치면서 걸러지거나 변형되는 시류 정보의 한계 보완과 언론이 열린 정치를 구현할 목적이었다. 불통의 정치를 극복하고 소통의 정치를 펼치기 위한 장치의 하나였던 것이었다.

일반 백성에게 언론을 개방한다는 취지로 설치·운영된 신문고는 신분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장치였다. 하지만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의 모순이 있었다.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신문고를 치는 일이 쉽지 않았으며, 신문고를 치기 위해서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했다. 신문고가 설치된 자리가 평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대궐(창덕궁의 이정전, 서남문과 경희궁의 숭정전, 동남문인 건명문)이었다. 그것은 '누구나 칠 수 있다'는 근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효용성이 거의 없었다. 접수된 사안 중에도 사헌부에서 규명한 후, 정당한 것은 판결하여 억울함을 풀어주되, 사사로운 원한과 무고인 경우는 북을 친 자에게 벌을 주기도 했던 것이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는 북을 치는 절차의 까다로움이었다. 만일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북을 치면 엄벌로 다스렸다. 게다가 모든 문제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었다. 엄격한 신분제에 의하여 위사람에 대한 일은 철저하게 통제되었다. 북을 치는 사유도 규정과는 달리 대부분이 개인적인 이해나 노비·형벌·재산 문제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에 관련된 일에 한해서만 받아들여질 뿐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신문고는 칠 수 있는 자격이나 많은 통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큰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고는 조선의 통치자들

이 일반 백성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발언권을 보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민중의 의견을 지배층에 전달하는(下情上達) 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왕이 지나는 길목에서 친 '격쟁'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 정신없이 뛰다가도 그 자리에서 엎드린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어야 했던 것이 왕의 행차였다. 그러나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왕 앞에 나서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 '격쟁'이 그것이다.

격쟁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에게 하소연하기 위해 임금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징이나 팽과 리를 쳐서 해결책을 구하는 제도였다. 신문고가 폐지된 뒤에 실시된 제도로, 국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면에서 매우 적극적인 장치였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아도 파격적인 청원제도이긴 하지만, 신문고처럼 무조건 격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손이 조상을 위하여, 처가 남편을 위하여, 동생이 형을 위하여, 종이 주인을 위하여 격쟁하는 경우 등 네 가지로 제한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원칙의 운용에는 융통성이 있게 마련이어서, 네 가지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소송 거는 것을 즐겨 사리에 어긋나는 일로 격쟁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 귀양 3천 리의 벌을 내렸다. 그리고 각각의 사안에 따른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했다. 격쟁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최종 판결을 담당한 관리들의 오판이 많았던 데다가, 절차가 편하다 보니 사소한 일로 격쟁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1560년(명종 15)에는 궁궐에 함부로 들어와서 격쟁하는 자가 너무 많아 이들을 엄벌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사소한 격쟁의 난립과 제도 운용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1777년(정조 1)에는 대궐 밖에서만 격쟁하는 법을, 1858년(철종 9)에는 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할 때만 격쟁·소원할 수 있는 법을 정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격쟁이 축소된 것은 사소한 격쟁과 오판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길을 좁힌 행정 편의적 조치이기도 하다. 권력과 재력에서 소외된 민중들이 자신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힘든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일부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 백성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언론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